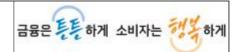


보 도 참 고



보도	2024.8.26.(월) 조간	배포	2024.8.25.(일)		
담당부서	은행검사1국	책임자	국 장	김형순	(02-3145-7050)
		담당자	팀 장	박진호	(02-3145-7060)

○○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

□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前금융지주회장 친인척** 대**상 부적정대출 취급'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동 대출을 취급한 은행 측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내용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사실관계 등 설명 〉

1. 금융사고 미보고 미공시 관련

-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은행은 이미 '24.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9.경 수사기관 고소*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 * ○○은행은 '24.8.9.경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하여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상기 사실관계를 기초로 보면 적어도 '24.4월 이전에는
 ○○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은행은 '24.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23.4분기 중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23.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 참고로, ○○은행은 <u>'24.8.23.</u>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 근거>

- □ 「은행법」제3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7조에 따르면,
 -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者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자체감사 등 늑장 대처 관련

- □ ○○은행은 '23.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 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 '23.9~10월경 여신감리 중 동 여신이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 '23.12월 동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24.1월이 되어서야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24.3월 감사종료 및 '24.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 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온 바 없습니다.
 - 이후 '24.5월경 금융감독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동 감사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 하고서도 금융감독원 검사(6.12~7.19.)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9. 16:30경)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9.저녁)하였습니다.

3.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 관련

- □ '23.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24.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이사회 보고 여부 관련

- □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23.12월 **지배 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은행에 대해서도 '23~'24년 기간 중 총 4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우려됩니다.

〈 향후 계획 〉

- □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 해당 금융회사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 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